

소 부루세라병 방역대책과 예방



강문일 원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내 소 사육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소 부루세라병은 부루세라 아보터스(*Brucella abortus*)에 감염된 소에서 유산 및 불임증을 주증으로 하는 만성 질병으로서 사람에게도 전파가 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소 부루세라병에 감염된 초임 암소는 유·사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경산우나 수소의 경우에는 무증상 감염(불현성 감염)이 빈번하기 때문에 임상 예찰 등 외부적인 관찰로 감염여부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질병의 주 전염경로는 부루세라병에 걸린 소의 유산·출산시의 태반·태액, 유산 전후 질 분비물 및 감염 유방에 분비되는 우유 등의 섭취로 인한 경구 감염이다. 또한 부루세라병에 감염된 소와의 교미, 부루세라균에 오염된 정액 또는 인공수정 장비를 사용한 인공수정 등 생식기를 통한 감염도 가능하며, 안점막 또는 손상된 유점막 및 피부에 부루세라균이 노출되어 발생하는 접촉감염의 사례도 발생한다. 특히 감염소의 임신은 유산 증상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생식기 분비물을 통해 병원체를 계속 배출하게 되므로 농장주나 관리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농장내 감염을 확산시키는 주요 전파원인이 된다.

최근 몇 년간의 국내 소 부루세라병의 발생동향을 분석해보면 젃소의 경우 '00년을 정점으로 하향 안정된 발생양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한우에서는 '03년을 기점으로 '04년 이후 감염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한·육우 검진 강화를 위하여 '부루세라 검진우 가축시장 거래제('04.6월)', '다발지역 일제검사('04.11월)' '도축용 암소 검사('05.3월)' 등 새로운 검진

제도 도입으로 인한 검사두수의 증가가 발생률(검색률)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아래 표 참조)

표 1. 최근소부루세라병의 연도별 발생동향

전체	건수	271	131	110	172	711	2,590	1,199
	두수	1,249	754	845	1,088	5,383	17,690	9,286
한우(건/두)	5/51	4/70	5/183	62/590	595/4,101	2,449/15,524	1,123/8,162	
젖소(건/두)	266/1,198	127/684	105/662	110/498	116/1,282	141/2,166	76/1,124	

정부에서는 소 부루세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잠복 감염된 소를 조기에 색출하여 강제도태(살처분)하고, 동일 농장의 비감염 동거소에 대하여는 권고도태(도축장 출하 권고) 등 부루세라병 확산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소 부루세라병 방역대책 추진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소 부루세라병 발생농가의 경제적 피해 해소를 위하여 살처분 가족에 대한 보상금 100% 지급 및 비감염소 도태시 도태 장려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대책도 실시하여 왔다.

그 간의 도축용 암소 중심의 검사체계를 통한 검색 및 감염우의 처리 대책 추진으로 소 부루세라병의 급속한 확산차단에는 일단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나, '04.~'06.6월 현재 한우 부루세라병 농장감염율(신규농장 년평균 신규발생농가 검색율)이 지속적으로 2%를 상회하고 있고, 부루세라병 발생원인 유형분석 결과외부 소 구입이 부루세라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소 부루세라병 근절 기반조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금년 7월부터는 '검사체계 보완으로 감염소 색출강화 및 전파최소화', '농가의 방역책임 의식 제고로 예방체계 확립' 및 '2013년 근절을 위한 단계별 방역지표 설정 및 대책추진'을 기본 방향으로한 부루세라병 방역보완 대책을 수립·시행 중에 있다. 동 보완대책 세부사항으로는 '검사증명서 휴대제와 관련된 소 귀표 규격화', '10두 이상의 한·육우 사육농장에 대한 정기검사', '거래되는 모든 송아지의 어미소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발생농장 이동제한 기간연장 및 재검사 횟수 확대', '다발지역·취약농가 등에 대한 역학조사 및 방역서비스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소 사육농가의 자율방역 의식의 저하와 도덕

적 해이(moral hazard) 등 발생농가에 대한 규제 강화책으로 질병발생에 대한 농가의 책임부담을 위하여 살처분 보상금의 상한가격 점진적 축소(시가의 100%에서 '06 11월부터 80% · '07. 4월부터 60%로 단계적 감액)와 이동제한 · 검사명령 위반시 보상금 차등 지급 강화 및 보상금 적정 평가를 위한 측량 의무화 등 보상금 평가 방식개선을 통한 소 사육농가의 능동적 예방활동 및 방역 책임의식 향상을 도모하는 일련의 대책도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주 · 연방 협력 부루세리병 박멸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실시로 농가에 환원되는 경제적 이득이 엄청난 규모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단적인 예로 유랑감소, 유산태아, 번식을 감소에 기인하는 연간 손실액이 1952년 4억 달러에서 오늘날 100만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예가 아니더라도, 국내 소 부루세리병 발생농가에 지급되는 살처분 보상금 및 도태장려금 등 직접 손실액만도 매년 천억원 가까이 이르고 있으며, 소 부루세리병 검진 및 예방활동에 투입되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 및 소 사육농가의 생산성 저하 등의 직 · 간접 손실비용은 추산하기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축산업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소 부루세리병의 근절이 축산인 모두의 숙원이자 당면 과제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 협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가슴을 열어 “나부터”라는 주체적 참여의식이 동반되어야만 소 부루세리병 청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내 농장부터 철저한 방역위생관리를 실천하고, 나부터 외부입식소는 구입시 반드시 비발생 농장에서 부루세리병 검사를 받은 소를 선별, 기존에 사육되는 소와는 별도 격리(30~60일간) 사육후 재검사를 의뢰한 다음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기존 사육소와 합사하여야 한다. 만일 사육중인 소에서 유 · 사산 등 부루세리병이 의심되는 소가 발견되면 즉시 가까운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가축방역관의 지도 및 조치사항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질병발생 차단의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부터”, “내 농장부터”, “우리 마을부터”, “우리 지역부터”라는 마음으로 그간 슬하하게 들어온 예방수칙을 하나씩 실천해 가는 것이 소 부루세리병 청정화에 다가서는 첫걸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당부드린다.